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86

제출일자 : 2022. 3. 11.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 및 활용도 제고
-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공개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용역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 제3조)
- 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 제8조)
- 다.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기준, 결과 공개 등 관리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 ~ 제56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가용가능 재원 활용 및 2023년 본예산 반영 예정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 2. 10. ~ 3. 2.)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과 연구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달성군의 담당부서를 말하고, “예산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의 편성 등 그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달성군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달성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달성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만으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3. 국·시비 재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용역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를 끌어올림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달성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기획예산실장

다. 정책연구용역 수행 관련 소관 국장·소장·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나.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② 심의 대상 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기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관부서 국·소장, 실·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예정된 일정에 따른 연구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 용역검수)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가 이행한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좋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그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달성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끌어올리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예산이 수립된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년 월 일)

우선순위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비 고
		원안가결	조건부인승	부결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 위원회 심의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	-----

용역명	
-----	--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담당자	주관부서장	전 화	비 고

용역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역 개요	○ 용역명: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행 자: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팀장 주관부서장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 사항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정책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 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실적·활용방 안			
기대효과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공개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

2. 비용 발생 요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 등 운영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 제10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예산 편성 운영 계획의 기준경비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 10명 × 130천원 × 2회 = 2,600천원 ※ 2022년도 1회분 반영

나. 추계 결과 : 11,700천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1,700천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11,700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염찬효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 입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지 방 세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의존재원		-	-	-	-	-	-
세 출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사무관리비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재원 조달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지방세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균 비		1,300	2,600	2,600	2,600	2,600	11,7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